



주택상담사의 자격검정제도 전환방안

민간자격제도 관련 법규 및 현황



최윤정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2008년도 자격관리위원회에서는 주택상담사 1급/2급의 발전방안으로, 자격의 명칭을 (가칭)1급/2급 주택사(CHP; Certified Housing Professional)로 변경하면서 자격검정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운영체제(안)를 연구하였다.

이 원고는 연구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요약한 것이며, 자격검정제도 전환을 위한 운영체제를 제안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민간자격제도에 관한 관련 법규 및 현황을 검토했다.

1. 민간자격제도의 개념과 현황

“자격”의 유형은 <표 1>과 같이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시행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대별된다. 국가자격은 국가가 법률에 따라 부여하는 자격으로,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과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으로 구분된다. 반면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은 자격 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공인민간자격과 순수민간자격으로 분류된다. 본 학회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자격”은 민간자격으로서 능력인정형 전문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1) 민간자격제도의 개념 및 도입배경

현대사회는 능력중심의 사회를 중시하면서 평생학습시대로 접어들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직업세계에서의 직무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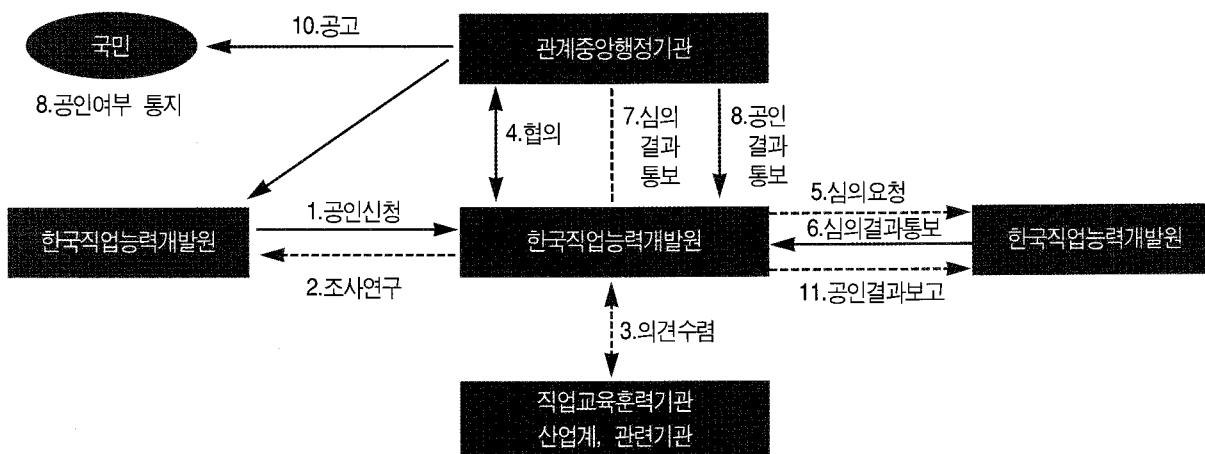
화와 산업현장의 요구에 대응하고자 직무능력을 입증하는 자격이 중요한 도구로 등장하게 되었다.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에서는 우수한 산업인력의 양성과 공급을 위해 1973년 ‘국가기술자격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중심의 자격제도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국가 중심의 자격제도는 개인의 인적자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며, 급변하는 직업세계의 양적·질적 수요에 보다 효과적인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자격의 소비주체인 기업 등 민간이 자격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자격제도의 관리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1997년 「자격기본법」과 「자격기본법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자격제도의 평가주체에 공신력을 인정하여 공신력있는 민간자격 운영주체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노동시장과 학습을 직결시킴으로서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촉진하는데 기초하는 제도이다.

[표 1] 자격의 유형

분류기준	유 형	
기능별 유형	업무독점형 자격·면허	능력인정형 자격·기술자격
내용별 유형	전문자격·국가기술자격	일반자격·워드프로세스, 영어자격시험 등
시행주체별	국가자격	민간자격



주택상담사의 자격검정제도 전환방안



▲ [그림 1]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운영구조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민간자격국가공인제도 설명회 자료”

자격은 통상 학습결과에 대한 인정으로 정의 내려지는 데, 「자격기본법」상의 자격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된 지식·기술의 습득 정도로써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절차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제도는 현행법인 「자격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국가 이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소정의 조사·연구를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로, 2000년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국가공인을 신청한 민간자격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소정의 평가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민간자격의 공인절차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고자 하는 민간자격관리주체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에게 해당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공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신청을 받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공인을 받고자 하는 민간자격의 필요성, 자격검정의 기준, 관련 국가자격과의 호환성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한 후,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업교육 훈련기관 및 산업체 또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며,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장(국가기술자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을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직업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가 끝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심의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심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공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신청인에게 통지한 공인 결과를 당해 자격과 관련이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장과 개발원장에도 통보해야 하며, 공인 결과를 통보 받은 개발원장은 그 내용을 심의회의 다음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3)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현황

현재 다양한 종목의 민간자격이 통용되고 있는데, 2005년에 실시된 민간자격 실태조사에 의하면, 총 248개 기관에서 805개의 민간자격이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자격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표에 의하면, 2008년 1월 기준(현 정부의 조직개편 이전으로, 변경 전 정부부처명 사용)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11개 정부 및 관련 부처에서 소관하는 총 70개의 자격종목이 시행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2개, 재정경제부 7개,



주택상담사의 자격검정제도 전환방안

[표 2] 자격기본법의 민간자격관련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근 거
용어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 기술 · 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 - “국가자격”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하는 자격. - “민간자격” :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하는 자격. - “주무부장관” : 해당 민간자격을 공인하고 이를 지도 ·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자격검정” 이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과정. - “공인” : 검정기준 · 검정과목 ·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 	법 제2조
자격제도 관리 · 운영의 기본방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2. 자격체제에의 부합 3.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4.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5. 평생학습 · 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6.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법 제3조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p>①민간자격 신설 제외분야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p> <p>②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p>	법 제17조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조
민간자격의 공인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조에 따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 · 운영능력을 갖출 것 2.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3.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 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 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 - 주무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 · 산업체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공인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19조 시행령 제9조, 24조, 25조, 26조, 27조 시행규칙 제3조, 4조

교육인적자원부 15개, 행정자치부 2개, 문화관광부 4개, 산업자원부 7개, 정보통신부 13개, 보건복지부 3개, 노동부 13개, 경찰청 2개, 산림청 2개 등이 있으며, 총 41개의 다양한 사단법인이나 공인된 단체 등에서 자격을 관리 · 운영하고 있다.

2. 국가공인 민간자격 관련법규

1) 자격기본법의 민간자격관련 주요내용

자격기본법에서 민간자격에 관해 규정한 내용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즉, 현행 자격기본법에서는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민간자격에 대하여, 등록과 공인에 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격기본법에 명시된 자격제도 관리 · 운영의 기본방향

은 ①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②자격체제에의 부합, ③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④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⑤평생학습 · 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⑥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등이며, 민간자격의 공인기준은 ①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 · 운영능력을 갖출 것, ②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③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 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 등이다.

2)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대우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표 3>에서



주택상담사의 자격검정제도 전환방안

[표 3]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대우

대우 내용	근 거 법 령
법령에 정하면 국가자격과 동등한 대우 가능	자격기본법제23조 (공인자격의 취득 등) ③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 대상자격이 될 수 있음	국가기술자격법[일부개정 2007.4.27 법률 제8406호] 제12조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 ①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4.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공무원 임용시, 평정규칙상 기점 (직무관련상) 대상자격이 될 수 있음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 2008.6.27 대통령령 제20888호] 제27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 「자격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민간자격증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중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2.29> 1. 「자격기본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 가능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일부개정 2007.12.17 행정자치부령 제410호] 제23조 (자격증등의 가점) ①5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1998.12.8, 1999.7.3, 2004.3.2, 2005.4.14, 2007.12.17> 1. 삭제 <2007.12.17> 2. 별표 3 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다만,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자의 당해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점평정할 수 없다.
학점인정대상 자격이 될 수 있음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6.11 대통령령 제20809호] 제39조 (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①산업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그 우선순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5, 2007.4.12> 3.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주택상담사의 자격검정제도 전환방안

보는 바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①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②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③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평정규직상 가점이 될 수 있다. ④산업대학의 학생 선발방법에서 우선선발자격이 될 수 있다. ⑤학점인정대상학교 등에서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이 될 수 있다.

3. 맷음말

이상에서,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이란 자격기본법에 의해 검정기준·검정과목·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

는 것으로서, 2008년 1월 기준 총 70개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시행 중이며,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취득자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대우를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거학의 학문적, 실천적 성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내년에 20주년을 맞는 국내 주거학 분야에서 가장 역사가 긴 본 학회에서, 주거학전공자의 직무분석을 시도하고 이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민간자격인 (가칭)주택사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공인을 받는 것이 매우 필요한데,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수를 감안하면 가능한 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서는 검정기준·검정과목 등의 검정수준이 국가자격과 동일수준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